

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!
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더불어민주당 구로 제3선거구 황규복 의원입니다.

-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
「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」에 대한
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- 본 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오늘날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 다변화와 사용자 증가로
시민과의 온·오프라인 소통이 점점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.
이에 시의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
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
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.

- 주요 내용으로는
시민, 시민 소통, 시민 참여, 시정 정보, 소통 매체, 소셜 미디어 등을 정의하고,
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며,
시민소통 활성화 사업의 내용과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
규정한 것이 있습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,

본 제정안을 통해

서울특별시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시정 공감대를 형성하고

적극적인 시민 참여 시정을 구현하여

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

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
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,

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